



제429회 국회 (정기회)
제14차 법제사법위원회

출입국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출입국관리법령 위반자 통보의무 예외 규정〉
■ 이강일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08884호)

2025. 11.

법 제 사 법 위 원 회
수석전문위원 정 환 철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발 의 자: 이강일의원 등 13인
2. 발 의 일: 2025. 3. 13.
3. 회 부 일: 2024. 3. 14.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이 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고,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통보의무를 면제하고 있음.

그런데 근로감독관 등 공무원이 노동관련 사항을 조사하던 중 외국인 근로자의 위법한 체류를 알게 된 경우는 통보의무가 면제되는 사유에 해당하지 않음. 따라서 외국인 근로자들이 임금체불 등 노동현장에서 피해를 입은 경우에도 강제퇴거 통보가 될 수 있다는 두려움에 적극적으로 권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례가 발견되고 있음.

이에 대통령령에 규정된 면제사유들을 법률로 규정하고, 임금체불과 같은 노동관계법령 위반 사건의 조사 및 근로감독 과정에서 강제퇴거 대상자를 발견한 경우를 통보의무 면제사유에 추가하여 체류외국인 근로자들의 권리를 보호하려는 취지임(안 제84조제1항, 제2항 및 제86조제2항).

Ⅲ. 검토의견

개정안은 공무원이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업무수행 중 출입국관리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더라도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하지 않도록 예외 사유를 규정하려는 것임(안 제84조제1항, 제2항 및 제86조제2항).

현행	개정안
제84조(통보의무)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그 직무를 수행할 때에 제46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이나 이 법에 위반된다고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 <u>다만,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에 해당하는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u> <u><신 설></u>	제84조(통보의무) ① ----- ----- ----- ----- ----- ----- ----- ---. <u><단서 삭제></u> ② <u>제1항에도 불구하고 공무원이 통보로 인하여 그 직무수행 본연의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u>

호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1항에 따른 통보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

	<u>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u> 5. 「근로기준법」 제102조 및 제102조의2에 따라 근로 조건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6.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② (생략)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생략) ② 교도소·소년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보호감호소·치료감호시설 또는 소년원의 장은 <u>제84조제2항에</u>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통보한 외국인에 대하여 강제퇴거명령서가 발급되면 석방·출소 또는 퇴원과 동시에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그를 인도하	③ (현행 제2항과 같음) 제86조(신병의 인도) ① (현행과 같음) ② ----- ----- ----- ----<u>제84조제3항에</u>----- ----- ----- ----- ----- ----- -----

여야 한다.

-----.

현행법은 원칙적으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이 직무수행 중 출입국관리법 제46조제1항 각 호¹⁾의 위반으로 강제퇴거 대상이 인정되는 사람을 발견하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에게 알리도록 규정하고, 통보하지 않는 예외적 사유를 대통령령에서 규정하도록 하고 있음.

이에 따라 「출입국관리법」 시행령은 ① 「유아교육법」 및 「초·중등교육법」에 따른 유치원 및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 생활과 관련한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②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에 따른 보건 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③ 「아동복지법

1) 「출입국관리법」 제46조(강제퇴거의 대상자) ①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은 이 장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을 대한민국 밖으로 강제퇴거시킬 수 있다.

1. 제7조를 위반한 사람
2. 제7조의2를 위반한 외국인 또는 같은 조에 규정된 허위초청 등의 행위로 입국한 외국인
3. 제11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입국금지 사유가 입국 후에 발견되거나 발생한 사람
4. 제12조제1항·제2항 또는 제12조의3을 위반한 사람
5. 제13조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6. 제14조제1항, 제14조의2제1항, 제15조제1항, 제16조제1항 또는 제16조의2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상륙한 사람
7. 제14조제3항(제14조의2제3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 제15조제2항, 제16조제2항 또는 제16조의2제2항에 따라 지방출입국·외국인관서의 장 또는 출입국관리공무원이 붙인 허가조건을 위반한 사람
8. 제17조제1항·제2항, 제18조, 제20조, 제23조, 제24조 또는 제25조를 위반한 사람
9. 제21조제1항 본문을 위반하여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근무처를 변경·추가하거나 같은 조 제2항을 위반하여 외국인을 고용·알선한 사람
10. 제22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이 정한 거소 또는 활동범위의 제한이나 그 밖의 준수사항을 위반한 사람
- 10의2. 제26조를 위반한 외국인
11. 제28조제1항 및 제2항을 위반하여 출국하려고 한 사람
12. 제31조에 따른 외국인등록 의무를 위반한 사람
- 12의2. 제33조의3을 위반한 외국인
13.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석방된 사람
14. 제76조의4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1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10호까지, 제10호의2, 제11호, 제12호, 제12호의2, 제13호 또는 제14호에 준하는 사람으로서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사람

」에 따른 보호 조치의 업무 수행 중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④ 「청소년복지 지원법」에 따른 청소년 상담·긴급구조·자활 등의 업무 수행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등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음.

개정안은 현행 시행령이 규정한 통보의무 면제사유를 법률로 상향 규정하려는 것으로, 공무원 통보의무 및 외국인 퇴거규정의 강제력과 규범력의 중요성을 고려할 때, 그 예외를 직접 규정함으로써 명확성을 제고한다는 측면에서 타당한 입법조치로 보임.

한편, 개정안 제84조제2항제5호는 현행 시행령 각호에 규정된 것과는 별개로, 통보면제 사유에 “「근로기준법」 제102조 및 제102조의2²⁾에 따라 근로 조건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를 신규로 추가하고 있음.

이는 노동관계법 위반 사건 조사 중 취득하게 된 외국인 근로자의 신

-
- 2) 「근로기준법」 제102조(근로감독관의 권한) ① 근로감독관은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 건물을 현장조사하고 장부와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② 의사인 근로감독관이나 근로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에 근로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檢診指令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 또는 검진지령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근로감독관은 이 법이나 그 밖의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법경찰관의 직무를 수행한다.
- 제102조의2(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서 정하는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2.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에 따른 피보험자격에 관한 신고자료
 3. 그 밖에 근로자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 ② 제1항에 따라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상정보로 인해 강제퇴거 대상이 될 것을 우려한 외국인의 불안과 불이익을 고려한 것으로, 개정안을 통해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부당대우나 임금체불과 같은 근로조건 위반을 개선하고, 나아가 권익보호의 실현에도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 취지가 인정됨.

다만, 이 경우에도 출입국관리법을 위반한 강제퇴거 대상 외국인을 과도하게 보호한다는 불필요한 오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개정안 취지에 맞게 임금체불, 근로조건 위반 등 노동관계법령 위반에 대한 조치, 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예방과 같은 외국인 근로자 권익보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통보의무를 면제하도록 하는 방안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통보의무 면제 요건에 관한 현행 시행령 및 개정안 비교 】

「출입국관리법」시행령 제92조의2	개정안 제84조제2항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및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서 외국인 학생의 학교생활과 관련하여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시행령과 동일
2.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공공보건의료기관에서 담당 공무원이 보건의료 활동과 관련하여 환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시행령과 동일
3. 「아동복지법」 제15조제1항 각 호의 보호조치 또는 같은 법 제22조제3항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시행령과 동일
4.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청소년 상담복지센터에서 청소년에 대한 상담·긴급구조·자활·의료지원 등의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시행령과 동일
-	5. 「근로기준법」 제102조 및 제102조의2에 따라 근로조건 등 노동관계법령의 위반사항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 근로자의 신상정보를 알게 된 경우
5. 그 밖에 공무원이 범죄피해자 구조, 인권침해 구제 등 법무부령으로 정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해당 외국인의 피해구제가 우선적으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시행령과 동일

문 의 처

02)6788-5057